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7. 11. 10.

판결 선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4)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5) 별지 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6)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6. 30. 접수 제378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7)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3. 24. 접수

제1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 6. 3. 접수

제101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1 목록 제3,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 6. 3. 접수

제101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 6. 3. 접수

제101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 6. 3. 접수 제10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5면 아래에서 5행 부분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 B'을 'C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 B'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재판장판사박헌행

판사조영민

판사양해인

별지